



양도소득세

과점주주의 납세의무에 주의하자

글 | 정태화 세무사

회사의 주식을 보유 중에 예기치 않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체납된 세금을 대신해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취득세를 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현재 법인을 계획하고 있거나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한번쯤 이러한 과점주주의 세금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1. 과점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살펴보자.

어떤 회사에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다. 그렇다면 이 체납된 세금이 그냥 없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수단을 통해서 징수가 될까? 세법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즉 제1차 납세의무자인 법인(회사)의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부족액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에게 부족분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예를 들어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60%인 상태에서 체납세액 1억원이 발생했다면 과점주는 6,000만원을 한도로 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여기서 과점주는 해당 국세가 법인세라면 12월 31일(12월말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라면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사전에 누가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이를 파악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 2차 납세의무”는 주주 1인

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자의 소유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친족 기타 특수 관계자는 6촌 이내의 부계(친가)혈족,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등을 말하고 있다. 실무상 이를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므로 사전에 전문가를 통해 그 범위를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과점주주 등에 해당하는 모두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울 것인가. 이에 대해 세법은 명예회장·사장·부사장·전무·이사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는 자 등으로 국한시켜 최종적인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 2차 납세의무는 없다. 과점주는 앞과 같이 제 2차 납세의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법인 설립 때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다. 만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된 경우도 이를 벗어나기 위해 주식을 매도·증여하는 경우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문제 가 있으므로 미리 세금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중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때에는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 신고 시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작성에 유의해야 한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거래금액의 10,000분의 5만큼을 양도일 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5,000만원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면 $5,000\text{만원} \times 5/10,000\text{인} = 25\text{만원}$ 이 된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그리고 양도 소득세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인 과세표준에 대해 과세한다. 3,000주를 양도한다고 하다. 주식의 양도가액이 10,000원이고, 취득가액인 5,000원이라면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다. 기타 필요경비는 없다고 하자. $[(10,000 - 5,000) \times 3,000\text{주} - 2,500,000] \times 10\% = 1,250,000\text{원}$ 이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일반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는 30%, 중소기업은 10%, 그 밖의 경우는 20%이다.

이때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하면 100분의 2의 가산세가 있다.

2. 과점주주가 지방세인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언제 부담하는가?

일반적으로 법인이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한다. 그런데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과점주주는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하고 그 자산을 지배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는 차원에서 이런 규정이 만들어졌다. 물론 이때에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며,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설립 시 과점주주도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다만,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지분이 증가하면 증가된 비율만큼 추가로 내야 한다. 이외 일반주주 상태에서 주식을 추가취득(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면 역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설립 시 30%의 주식으로 있다가 주식 매수나 증자 등을 통해 60%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최초 과점주주가 된 때에 6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과점주주가 된 이후 지분이 증가된 때에는 증가된 지분율에 대해 취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지분이 감소된 후 다시 증가된 경우에도 최종 지분율이 감소전의 최고 지분율을 상회해야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설립 시 55%인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주식지분율이 40%에서 55%로 증가되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55% 전부에 대해 취득세를 부담하며, 과점주주 지분율이 53%에서 60%로 되면 7%에 대해 취득세를 추가로 부담한다. 과점주주(55%)가 주식지분율 감소(40%)된 이후 5년 이내 최초 주식지분율 이하로 증가(54%)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 반대로 5년 이후에 최초 지분율을 초과하면 취득세를 부담한다. ♦

